

이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(안)

1. 主要 法的根據

◎ 하수도법

- 제21조(사용료등) ① 공공 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
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공 하수도를 점용
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금은 공공 하수도에 관한 비용 이외에는
사용할 수 없다.
③ 제1항의 사용료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의 공고를 한 후가
아니면 징수할 수 없다.

2. 提案理由 및 檢討意見

이천시 공공하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하수도법 제21조
(사용료등)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용에
효율을 기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써,

본 조례에 대한 세입을 하수도 점용료, 사용료,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
타 세입으로 규정하고 있어,

이천시 하수도 사용조례(안)과 연계하여 심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
됩니다.